

거창군 체육시설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----|
| 의안 번호 | 2023-19 |
|----------|---------|

| | |
|-------|------|
| 제 출 자 | 거창군수 |
|-------|------|

1. 제안이유

어린이 수영교실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, 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교육일 경우 수영장 사용료 등을 면제하여 어린이가 물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생존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어린이 수영교실 운영을 신설함(안 제3조의2)

- 1) 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교육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 수영장 사용료 및 강습비 면제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조
- 2)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5조
- 3)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·제28조·제156조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: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

라. 기타사항

- 1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2) 입법예고
 - 가) 예고기간: 2023. 1. 20.~2. 9.
 - 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- 3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- 4) 성별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체육시설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체육시설 관리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어린이 수영교실 운영) 군수는 거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에 주민등록을 둔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교육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영장 사용료 및 강습비를 면제할 수 있다.

제4조 중 “거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”을 “군”이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| 현행 | 개정안 |
|--|---|
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 설></u></p> <p>제4조(개방제한) 군수는 경기대회 개최나 체육시설의 유지·관리 등에 지장이 있어 체육시설 개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<u>거창군</u> (이하 “<u>군</u>”이라 한다)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 등을 하여야 한다.</p> | <p><u>제3조의2(어린이 수영교실 운영) 군수</u>는 거창군(이하 “<u>군</u>”이라 한다) 에 주민등록을 둔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교육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영장 사용료 및 강습비를 면제할 수 있다.</p> <p>제4조(개방제한) 군수는 경기대회 개최나 체육시설의 유지·관리 등에 지장이 있어 체육시설 개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<u>군</u>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 등을 하여야 한다.</p> |